

2026년 제주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2차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2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2개 지원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총 50,000천원 규모 안에 지원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통합모집공고 선정기업은, 협약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 범위 내 지원가능)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단가	비고
예비선도 (스타)기업	예비선도 기업지원	기획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인증지원, 특허지원, 장비지원, 디자인, 제품고급화,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전 분야 시활용 가능	1개사 내외	협약일 ~11.20	40백만원	붙임 참조
	지역스타 기업지원		2개사 내외			

※ 프로그램별 선정 규모는 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적격 기업이 선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을 타 프로그램의 적격기업으로 전환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 지역 내 소재하며, 제주 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

* KSIC코드는 서식1. (양식)신청서 내 'KSIC코드_제주' 탭 참고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²⁾)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 기업부담금 10% 이상 필수,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이 원칙
 - 지원금은 선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하며(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완료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기간 중 일부 선지급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및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야 함(회계법인 추후 지정, 사업비 내 집행)

ex) 지원금이 40,000천원일 경우 예시

※ 기업부담금 10%, 총사업비 중 면세항목 없음 인 경우

- 기업 자부담 총액(B+C): 8,40천원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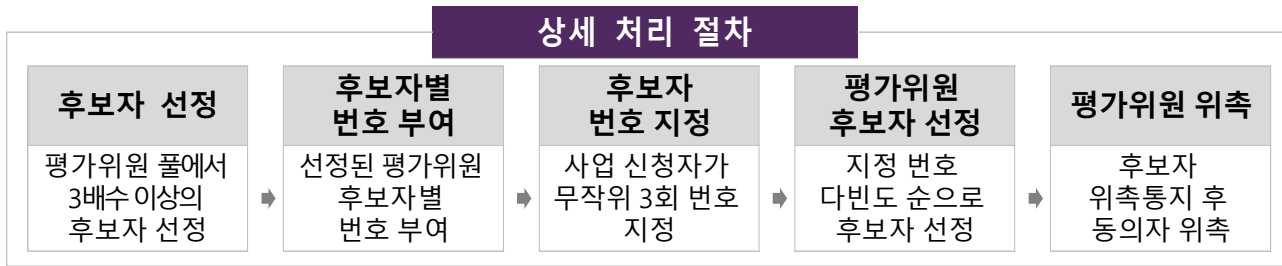
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사업비 A+B	(지원금+기업부담금)의 부가세 C
40,000	4,000	44,000	4,400

*사업비(지원금, 기업부담금)는 천원단위로 계상(0백0십0원 절사)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요건검토) 자격요건, 참여제한 등 사전 예비진단
-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지원 프로그램별 상이
- (평가위원 선정) 산·학·연·관 등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선정 및 3배수로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별 번호 부여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무작위로 3회 번호 지정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지정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다빈도 지정 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에 위촉통지 후 동의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평가단 위원구성 시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 * 사업화(경영·기획·마케팅·수출 등) 전문가, 지역주력산업(바이오·문화관광·에너지) 전문가 등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30)	○ 대표자의 의지 및 기업의 추진 역량 (현황 및 사업수행 준비 정도)	10
	○ 사업추진 배경 및 지원 필요성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20
	○ 성장전략(사업/수출 등) 수립 여부 및 상용화R&D 기획과의 연계성	
지원내용 타당성 (40)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 추진계획(사업내용, 범위, 일정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제품(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성(타겟시장/경쟁사 분석 포함)	
기대효과 (30)	○ 사업화 매출(수출) 및 고용 증대 가능성	20
	○ 신규시장 창출 또는 시장 확대 가능성	10

-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1

③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 예시: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지역 내 소재*하며,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너지, 바이오, 문화관광)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주 주력산업분야 KSIC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 선정평가위원회(또는 TP)의 검토를 통해 ‘관련 주력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구분	신청제외 대상
5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지원을 통한 성과물에 아래의 내용 반영
 - 제품고도화, 시제품 제작 등: 제품 등에 “비매품” 명시
 - 홍보물(인쇄물, 제품포장디자인, 영상물) 등 제작 시 문구 삽입

본 제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0000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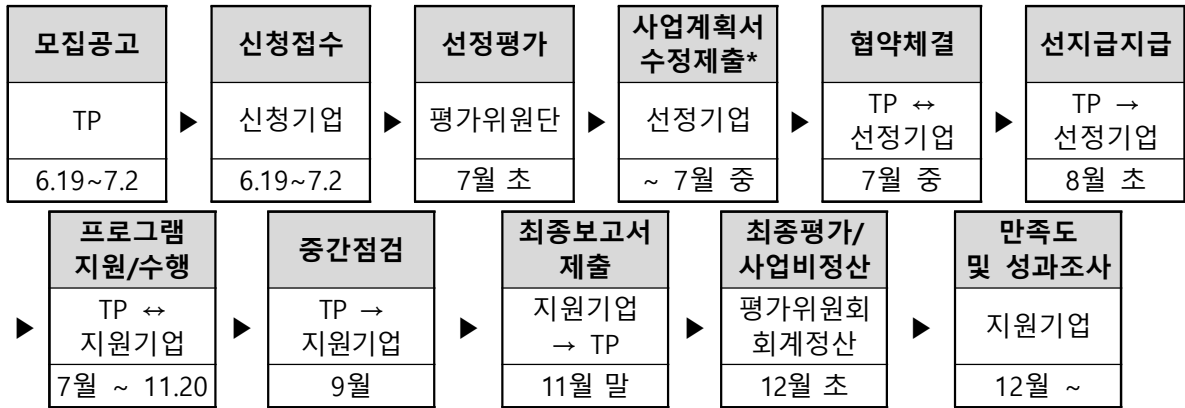
발행일자 : 2026. . .

* 크기 및 위치: 전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발행일자: 협약일 이후, 인쇄한 날을 기준으로 년/월/일 표시

4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선정기업은 사업비 세부사용계획 및 공급기업 견적서 첨부(회계정산기관 요율 반영 수수료 포함), 평가의견 반영 등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접수) 2026. 6. 19.(금) ~ 2026. 7. 2.(목), 17:00까지

※ 7월 2일 17: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1	신청서	서식 1	필수
2	과제계획서 (지원프로그램별 양식 상이)	서식 2-1, 2-2, 2-3	
3	평가위원 추천표	서식 2 내 [첨부 1]	
4	중복금지약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등	서식 2 내 [첨부 2~3]	
5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6	신청기업의 '23~'25년 재무제표 ※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기업제출	
7	희망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선택
8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기업제출	

6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소속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예비선도 (스타)기업	예비선도기업지원 지역스타기업지원	기업지원단	064-720-3056	poul1013@jejutp.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공급기업 등록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RMS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육성
- (지원규모) 총 13개사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설정
- (지원대상) 제주스타기업 9개사 또는 예비선도기업(신규)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상자격	기업수	기업당 지원금액
지역스타 기업지원	제주지역스타기업	제주스타기업 ('22년 지정기업 9개사)	2개사 내외	40백만원 이내
예비선도 기업지원	예비선도기업	전년도 매출액 60억 이상	1개사 내외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설정 (총사업비(110%) = 지원금(100%) + 기업부담금(10%))
 ※ 지역스타기업(예비선도기업)의 지원 및 평가 미선정에 따른 잔여기업 발생 시 예비선도기업(스타기업) 후보기업 선정

- (지원기간) '26. 7. ~ '26. 11. 20.
- (지원내용) 보유 기술의 질적 성장 및 시장확대를 통한 선도기업육성

□ 상세 프로그램 내용

지원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결과물	지원분야 (RMS선택항목)
기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신규 R&D 과제 기획 지원 • AX/DX 기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기획 지원 • 신제품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지원 	기획보고서	기획지원
시제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초기 개발 지원 해당 안됨) • AX/DX 기반 신제품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고도화 	시제품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이전 중개 지원 - 기술가치평가, 중개수수료(기술료는 미지원), 도입 기술의 기술지도 등 ※ 컨설팅만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RMS선택항목을 컨설팅 지원으로 선택요망 	결과보고서 기술이전 결과물 (특허 양도 및 실사권)	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시험 및 인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품질, 성능, 안정성 등 각종 시험분석비용 지원 ※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분석비용에 한함 ※ 협약기간 내 성적서(또는 분석 결과서) 발행 완료되어야 함 • 산업별 국내외 매출 확산을 위한 필수 시스템 인증 - 제품 및 생산시스템 등 국내 유통 및 국가 별 수출인허가 인증획득 예) KS, KC, GMP, FSSC 22000, CE, UL, FDA, FCC 등 ※ 공고일 이전 획득한 생산시스템 또는 제품의 인증연장신청은 선정평가 시 제외 단, 해당 생산시스템 또는 제품이 연간 매출 규모 및 성장성 인정 시 지원 가능 	시험성적서 인증서	인증지원(국내) 인증지원(국외)

지원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결과물	지원분야 (RMS선택항목)
특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 - 특허, PCT, 상표권, 디자인권 등 비용 지원 	특허증, 상표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개선 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신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3D모델링) 등 	디자인보고서 (연관 산출물 포함)	디자인
제품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적용) 사용자 경험 기반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개선·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품고급화
기술·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제품 생산성 향상, 원기절감 불량감소 등을 위한 공정효율화 지원 제조환경 및 생산 공정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AXDX 지원 ※ RMS 지원분야는 장비지원이나, 기업 자산으로 계상 가능한 설비는 비지원 (사업비 외 적용지원) ※ 공정 적용 내역서, 공정 개선 전후 비교데이터 SOP 개정본 필수 	컨설팅보고서 결과보고서	컨설팅(국내)
			장비지원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판로개척을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지원 (AI 기반)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지원 데이터 성과관리 필수 	결과보고서 (정량적 효과 포함)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보,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마켓 참가 비용 지원 	전시회 결과보고서	전시회(국내)
			전시회(국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평가 지원 - BM 수립/보완, 타당성 검토, 기술도입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업) 컨설팅 지원 - 특허기술 상품화를 위한 전략 수립,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 등 - 경영전략, 성과분석, 자금유치 등 	컨설팅보고서 평가보고서 전략보고서	컨설팅(국내)
			컨설팅(국외)

※ 지원내용 중 AI적용, AI기반으로 기재된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권장사항이므로, 가급적이면 AI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을 추천함
(미 표기 프로그램도 도입 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도입 권장)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23~'25년 재무제표
- (희망 공급기업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